

2022 KMDIA 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안내서

2022. 04



③ 사업자	-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지원내역 부속서류를 통보
④ 학회 등	-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비용결산 내역을 통보
⑤ 협회	- 사업자의 학술대회 지원이 적정하였는지 확인 및 통보 - 자기부담비율 조건 미준수 또는 비용결산내역 미통보시 추후 지원요청 거절

- 학술대회 총 수입에서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요양기관 등의 임직원 이외의 자(또는 법인)로부터 받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와 의료기기회사, 의료기기(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학술대회 주관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집기 구입비용, 기타 사무국 운영비용 등 해당 학술대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비용과 학술대회 중 규약 제3조 제8항의 학술 대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학술적 행사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규약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내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는 규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대회 종료 후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할 잔액을 협회로 반환한다. 협회는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각 사업자가 차지하는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신청조건 : 5개국 이상 보건의료인 참석 또는 외국인 150인 이상 참석하고 2일 이상 진행하며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국제학회
- 절차

① 사업자	- 학술대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국제학술대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고 (협회가 공정한 국제학술대회는 증빙서류 제외)
② 사업자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내역을 홈페이지에 증빙자료 통보
③ 협회	- 사업자가 학술대회 지원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

- 사업자는 학술대회 내용에 관여 금지
- 승인조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에 대해 국가별 참석 명단, 사업자 지원내역, 비용결산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술대회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규약 제8조 제4항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는 규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잔액을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각 사업자가 차지하는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5)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약 제9조, 세부운용기준 제6조)

- 대상 :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
- 지원범위 : 학술대회 주최자 측에서 선정한 발표자(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 포스터 발표자1인, e-포스터 발표자 1인), 좌장, 토론자
- 심의비 : 지원금액의 1.5%, 1억원 초과 시 150만원(VAT별도), 비회원 3%

- 절차

① 학회	-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에 협회에 홈페이지에 지원 요청
② 사업자	- 협회는 학회의 요청에 따라 공지 후 사업자는 학술대회 60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지원인원 제출
③ 협회	-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사업자에게 결과 통보 - 학술대회 종료 후 학회 주최자로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실비정산 내역서를 받아 검토 후 실비 정산액 사업자에게 통보
④ 협회	- 사업자로부터 지원금 받아 주최자(학회)에게 전달하면, 참가자에게 전달 - 1, 4, 7, 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 게재

- 지원범위

항목	인정금액
교통비	- 해외개최 학술대회는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 항공 왕복 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 국내개최 학술대회에는 목적지까지 국내항공료, KTX, 우등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 운임 제공 -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주증, 보당패스 제출
등록비	- 사전등록 원칙 - 비용은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
식대	- 1일 3식, 1인당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 -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식사시간대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1식 1장)
해외 현지교통비	- 해외 개최 학술대회는 현지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 간의 왕복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이용 시간,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
기타(환율)	- 정산 시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고고시가 환율 적용

6)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규약 제10·11조, 세부운용기준 제7·8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설명회
-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또는 교육

•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해외개최 교육·훈련

-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의 기술 습득·향상
 - 항공료, 숙박, 식음료비 등 지원 가능
 - 당해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용방법 등의 변경a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 반복될 수 없음
- 국내에 수입된 의료기기의 기술 습득·향상
 - 항공료, 숙박, 식음료비 등 참가자 본인 부담 시 가능

•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해외 개최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주요내용



1.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2017.11.10.)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2017.11.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사업자 및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기의 마케팅 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보건의료인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의료행위에 사용하도록 선정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의료기기”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수리업자”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수리업 신고를 한 후 의료기기의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후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곳을 말한다.

⑥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약사 및 한약사를 제외하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에는 규약 적용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으로 간주한다.

⑦ “해외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의·약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로서 규약 상 보건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는 규약 적용에 있어 보건의료인으로 간주한다.

⑧ “컨본품”이라 함은 의료기기의 소개용 완제품을 말한다.

경우 대회 종료 후 3월내에 기부한 사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경비의 회계처리 시 지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7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⑧ 규약 제8조 제7항은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Satellite symposium, Luncheon symposium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또는 e-포스터구두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으나, 포스터(e-포스터 포함)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건의료인이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원이 행해짐으로써 중복지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규약 제9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주최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개최 90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 60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을 통해 참가자를 지원한다.	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2.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유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최자,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학술대회의 주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 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제,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학술대회 주최자측로부터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내역서를 받아 검토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로 납부하도록 하여 학술대회 주최자측에게 전달한다. 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금액기준은 'VAT포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기준에서 동일 적용). 1.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2.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식대는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단, 현금결제 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	---	--	--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 6. 정산시 적용환율은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고고시가 환율을 적용한다. ⑥ 규약 제9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1,4,7,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 사업자명, 지원총액, 지원자수, 지원자 소속 의료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⑦ 사업자는 참가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본 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사제품 설명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에 한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품설명회 개최에 앞서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예정된	제7조 (자사제품설명회) ①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숙박은 1박 20만원 이내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3.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영수증 1장),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4. 기념품은 5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설명회 개최 40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제품설명회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해당 제품설명회 개최 승인을 신청하여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설명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협회는 사업자가 제품설명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제1항의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개최 1주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제품설명회의 일시·장소·내용, 참석자명단, 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교육·훈련) ① 사업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의 기술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의	② 규약 제10조 제2항 전단의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일 40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프로그램, 예산안 등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개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설명회 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프로그램, 참석자명단, 결산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품설명회 개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회에 심의비 20만원(VAT별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심의된 개최계획의 단순 변경(개최일, 장소변경 등)신고는 변경신고와 심의비가 면제된다. ④ 규약 제10조 제2항 후단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프로그램, 예산안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 한다. ⑤ 규약 제10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최대 4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식음료는 동일 보건의료인에게 제10조의 교육 또는 훈련의 경우를 포함하여 월 4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교육·훈련) ① 규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훈련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숙박은 국내는 20만원 이내, 국외는 35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교육·훈련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	--

온라인 행사 관련			
7	제17조 (전시·광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 산하단체 혹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전년도 참석자 800명 이상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하기 설명 참조) 참석자의 경우, 전년도(전차) 학술대회 결산시점에 기록된 “등록하여 참석한 인원 수”를 의미하므로, 학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받는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8	제17조 (전시·광고)	회원학회와 개별학회(비회원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경우 지원금액 상한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기 설명 참조) 규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더 낮은 상한금액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9	제17조 (전시·광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의료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 다른 종류나 유형의 학술대회에는 광고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연 1회)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1년이 아니라 온라인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기준 적용기간 1년(21.7.1~22.6.30)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1회 지원하였다면 학술대회의 종류나 유형을 달리하더라도 중복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록집 광고 횟수는 수량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초록집 광고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1)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관련 조항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내부규정 주요 내부지침	시행일자
제7조 (기부행위)	-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사업자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학·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에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등이 협회에 캠페인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액 한도는 50,000,000원 이하로 한다.	'15.12.11
	- 학술상 시상성의 경우, 수상금은 인당 5,000,000원 이하 이내로 한다. - 학술상 명칭의 경우, 특정 업체명, 제품명 등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해서는 안된다.	'21.02.05
	-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등 연구의 경우 최종적 결과물이 연구자에게 귀속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기 어려우며,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 할 수 있다. - 따라서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2] 임상시험 '지원'에 적절한 요건과 제한을 두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 하여 명목화 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며, 향후 기부금 지원 요청 건은 학술상 시상 및 캠페인 등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21.01.08
제7조 (기부행위)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의학·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이 기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규약에 의거하여 협회로 기부요청을 한다. -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요청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경고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간 3회 경고 시 지원 요청 단체에서 일정 기간 제외한다. - 단, 연구기관 등은 기간 미준수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보고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처분한다. - 의학·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은 연간 3회 이상 규약 상 명시된 지원요청 기한을 타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누적에 따라 3, 6, 9, 12개월간 지원요청 단체에서 제외한다.	'18.05.11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초록에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시간과 질의 응답 시간이 명기되어 있고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VIDEO SESSION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17.11.10